

#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2010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 감사 지적 및 2012년 자치단체 재단 등 예산출연 관리강화 지침에 따라 우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설립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당연직 이사선임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조, 제3조 신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조항 신설
- 평창군수의 당연직 이사 선임 조항 신설

나. 평창군 장학회의 구체적인 사업시행 조항 마련(안 제4조 신설)

- 장학금 지급, 우수재원 지원 등 구체적인 장학 시행사업에 대한 조항 신설

다. 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6조, 제7조 신설)

- 군의 출연금 지원근거 신설
- 출연금 운영 및 회계관리는 장학회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토록 조항 마련

라. 출연금 출연중지 및 회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8조 신설)

- 출연금의 부당/위반 사용시 출연중지 및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마.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9조 신설)

-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의 보고 및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발취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임원 등)** 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문화·예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평창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장학기금의 출연)** ① 군수는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 서식의 출연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출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① 평창군의 출연금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용하며,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
5. 그 밖의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출연금 지급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출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군 비	장학재단 자체 부담	기타
출연 사업기간			
사업계획	붙 임		
<p>「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 (인)</p> <p>평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 업 계 획 서】

○ 주사업의 개요

○ 지급받으려는 출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출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출연사업의 효과

○ 출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출연금 200,000,000원 출연

### 나. 관련 조문

- 제6조(장학기금의 출연) ① 군수는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및 추계 결과

-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의 운영·지원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출연금 1회 200,000천원

### 나.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 자체수입(지방세수입)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 상 진
연락처	(033) 330 -22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평창장학회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관계 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5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